(재)대전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87호

2026년도 산업통상부 장관포상(산업디자인진흥유공) 계획 공고(수정)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전·충청권 산업디자인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디자인 혁신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장

1. 포상 목적

- ㅇ 디자인경영전략 및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디자인 단체를 발굴 및 포상함으로써 최고의 영예를 수여
-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디자인 분야 종사자 사기와 의지를 진작시키고 국민 인지도 향상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가. 신청(추천)자격

- ㅇ 대전·충청권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 디자이너, 대학, 연구기관, 유관단체, 공공기관, 지역 공무원 및 정치인 등
-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 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포함)

나. 포상 규모

부문		포상종류	시상(수)	신청자격
개인·단체	대전·충청권 산업디자인 진흥유공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1	대전·충청권에 소재한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단체

*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안)

공고 및 접수 (9.30.~10.14.)	▶	위원회 심사 (10.22.(예정))	▶	공적심의 및 포상확정 (11월)	▶	결과 통보 (11월 중)	▶	수여식 (12.3.)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연락처로 개별 통보되며, 최종 수상자 발표는 국가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절차에 따라 11월에 통보 예정
* 사실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대상(개인/단체)만 진행됨(현장방문·조사 또는 서류 추가 제출 등 개별 안내 예정)

나. 심사기준(개인·단체 공통)

구 분	서면평가	현장실태조사(필요시 진행)
평가내용	분야별 특성지표 활용 (평가항목 참조)	서류검증 보완요청사항, 공적내용, 증빙자료 확인 등
평가방식	100%	적합/부적합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비고(고려사항)
총점 (100)	정량 (40)	디자인진흥 공적사항 (20)	□ 디자인진흥을 위한 공적사항 · 대전 디자인 연구 등 기반 조성 실적 · 대전 디자인 발굴·지원 실적
		유관기관 협력 기여도 (10)	□ 대전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실적
		관련업무 수행년수 (10)	□ 대전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련 활동 및 공적기간
	정성 (60)	디자인 활성화 이바지 (20)	□ 심사 대상의 공적이 디자인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례 등 기여한 정도
		디자인 산업 발전기여 (20)	□ 심사 대상의 공적이 디자인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도
		업무 개선 혁신 성과 (20)	□ 심사 대상의 공적이 국가 제도, 사회 관행, 행정 관례, 디자인 정책 등의 개선에 기여한 정도

* 상기 비고(고려사항)는 신청자의 공적조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평가항목 관련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14.(수) 18:00 / 15일간

○ 신청양식 : 대전디자인진흥원 (https://www.didp.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공적조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접수처(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요청**

* **상용 메일의 대용량 첨부파일**로 전환된 파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파일 전송 시, 기관 보안 정책으로 인해 **수신 불가**하므로 일반첨부로 발송 요망

○ 접수처 : (재)대전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부문	접수처	이메일 주소	연락처
산업디자인 진흥유공	(재)대전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white@didp.or.kr (산업디자인진흥유공 포상 담당자)	042-930-7844

나. 구비서류

○ 제출서류(별첨)

- 붙임1. (양식) 공적조서 1부
- 붙임2. (양식) 장관표창 추천동의서 1부
- 붙임3. (양식)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명단 1부
- 별첨. 소속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별첨. 공적 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산업재산권, 논문게재실적 등 증빙자료, 수상실적(표창장 등) 사본 또는 수상경력증명서, 매출액 및 수출액 증빙자료, 납품실적 증빙자료 등

5. 포상제한 및 추천제한 사항

가. 포상기준

○ 기준일

- (포상 추천일)「상훈법」 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 6조에 의해 산업부가 행안부에 추천하는 날
- (포상 수여일)「상훈법」 제29~30조 또는「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

<예외> 추가 수공기간 적용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에 한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일정기간: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 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격별 재포상 금지기간 >

기존에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표창			
	정부포상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산업통상부장관표창				3년

○ **포상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같은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 예외**

-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나.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심사 및 검증 후 포상후보자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결격 사유자는 추천을 제한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5. 기타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 문의처

- (재)대전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유공포상 담당자
 (Tel : 042-930-7844 / e-mail : white@didp.or.kr)

붙임 1. (양식) 공적조서 1부

2. (양식) 장관표창 추천동의서 1부

3. (양식)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명단 1부. 끝.